

신청기관 : 교육부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법제 체계

염철현 | 고려사이버대 교수

I 서론

미국에서 교육에 관한 소관은 주정부에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의 교육에 관여하는 근거 조항을 연방헌법의 일반복지(general welfare)에 두고 있다.¹⁾ 직접적으로 연방정부가 주의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은 없고, 국민의 일반복지 증진이라는 광의적인 차원에서 개입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주의 교육에 관여하는 방식은 세금으로 마련된 연방재원을 주에 지원하고 이를 평가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직업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미국은 일찍이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연방차원의 법제를 마련하고 연방 재원을 투입하면서 직업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직업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해서 학교는 교육목표와 교육방식에서 안팎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도 새로운 방향 설정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직업교육 법제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미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방향과 운영 방식에 적잖은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서론에 이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직업교육법제의 변천 과정 및 주요 내용을 탐색하는데 특히 2018년 연방의회의 재인가 심사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퍼킨스 직업기술교육(The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CTE)에 대한 중점적인 탐색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다.

1 Preambl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I 미국 직업교육법제의 변천 과정 및 주요 내용

1. 모릴법(1862년)

미국의 학교에서 시행된 직업기술교육은 1860년대로 거슬러 간다. 남북전쟁(1861-1865)이 한창이던 1862년 1차 모릴법(Morrill Act)과 1890년 2차 모릴법 제정²⁾으로 각 주에 대규모의 토지를 무상 증여(Land Grant)하여 주립대학 설립의 토대를 놓았다. 이때 주로 농업, 기계, 국방 관련 대학들이 설립되었는데 무려 106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미국의 고등교육발달뿐 아니라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 모릴법 제4조 2항에서는 “... 생활을 위한 각종의 일과 직업에 취업해 있는 산업계층의 자유롭고 실제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주의회가 규정한대로 농업과 기계 기술에 관계된 학문분야를 가르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 1개교 이상에 기본재산을 제공하고 그것을 보조하고 유지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³⁾ 모릴법을 모태로 설립된 대학을 시작으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당시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의 Welch 총장의 “지식은 사용하기 위하여 배워야 하며, 문화는 지식의 부수적인 결과이다.”라는 연설은 미국의 고등교육이 형식과 전통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선포하였다.⁴⁾

그러나 모릴법을 근거로 설립된 주립대학이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지만,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당시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직업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소와 실험실과 같은 대학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2. 스미스-휴법(1917년)과 1950년대

본격적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는 1917년 스미스-휴 국가직업교육법(The Smith-Hughes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ct)인데, 이 법은 미국 학교에서 농업, 무역, 산업, 가사 분야 등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다양한 직업을 담당할 청년층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방재원(federal funds)의 투입을 가능케 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직업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되었는데, 직업교육을 구체적인 직업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에 한정하게 되면서 일반 교육과정과 분리하였다.⁵⁾ 2017년은 스미스-휴법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 법은 오늘날 미국에서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⁶⁾

2 모릴법은 토지무상증여법(Land Grant Act)으로 불리는데, 각 주의 상하원 1명 당 3만 에이커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 불하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Agricultural 혹은 Mechanical College 대부분은 모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렇게 설립된 대학을 The Land-grant college and universities라고 한다(안기성(1994), 교육법학연구. 고려대 출판부. pp.212-220).

3 염철현(2000). 미국의 고등교육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Morrill Act를 중심으로. 북미연구 제5집. 2000년 2월.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북미연구소.

4 Brubacher, J. S. & Rudy, W., Higher education in transition. N.Y.: Harper & Row. 1958. p.64.

5 김재규 외(201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p.215.

6 <https://www.acteonline.org>

미국의 직업교육은 국내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강조하는 분야가 달라졌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간의 반목과 대립이 심했던 1920년대는 국가방위(national defense)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였다면, 1930년대는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여 2년제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토록 하였다.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의 참전에 따라 전시인력동원위원회(War Manpower Commission)가 주도한 전시생산훈련법(War Production Training Act)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은 크게 일반교육, 직업교육, 직무훈련프로그램 등 세 유형으로 분화하였다. 동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호를 지구궤도에 쏘아올린 사건은 미국 과학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때 국가방위교육법(1958)을 제정하여 과학, 수학, 외국어 등 국가방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고 직업교육분야에서도 기술훈련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⁷⁾

3. 직업교육법(1963-1984년)

1960년대는 산업 전반의 자동화의 도입에 따른 기술인력 및 숙련공의 부족과 실업률의 급등에 따라 당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국정수행의 최우선에 둔 존슨(L. B. Johnson) 행정부에서는 1963년 직업교육법(Vocational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의 확대 및 직업교육학교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 법에서는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의 시행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⁸⁾ 1968년 재인가를 받으면서 국가직업교육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Vocational Education)를 창설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직업교육 관련 재원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주정부에 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다. 연방정부는 연구와 산학협동, 진로지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직업교육의 재원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범주형 재정지원(categorical fund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예 1976년 개정안에서는 연방재원 중 10%는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지원, 20%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15%는 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게 되었다.⁹⁾

4. 칼 D. 퍼킨스 직업교육법(1984-2018년)

현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기술교육의 시행을 위한 연방차원의 법률적 토대는 1984년의 칼 D. 퍼킨스 직업기술교육법(CTE)이다. 이 연방법은 1990년, 1998년, 2006년,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연방의회 재인가를 받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CTE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인가를 받고 있다. CTE는 미국의 직업교육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육제도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라는 명칭 대신에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직업교육에서 기술교육뿐 아니라

7 https://en.wikipedia.org/wiki/Smith%E2%80%93Hughes_Act

8 <http://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019263656504930104?journalCode=bulc>

9 김재금 외(2007). 같은 보고서. pp.216-217.

일반학문의 습득이 직업교육에 필요함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직업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모든 계층의 직업교육진흥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¹⁰⁾ 셋째, 고등학교에서 2년의 직업교육과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서 2년의 직업교육을 연계시킨 2+2 프로그램(Tech Prep Program)의 시행을 위한 연방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는 상급 수준의 전문화된 기술과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¹¹⁾

2018년 연방의회는 재인가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개정 CTE는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8년 개정된 CTE는 “21세기 직업기술교육의 강화법(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개정법의 목적은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학업적, 기술적, 고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더욱 더 완전하게 개발하는 데 있다. 이 법령은 연방재원의 투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였다. 첫째, 각 주와 지역당국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및 기술적 기준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그 수준(고기술, 고임금, 맞춤형 직업 준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과 직업기술을 통합한 서비스와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직업기술교육을 개발, 시행, 개선할 경우에 각 주와 지역당국에 융통성을 더 제공하고, 넷째,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보급하며, 다섯째, 직업기술교육의 교사, 교직원, 행정가, 카운슬러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여섯째, 학교, 산업기관의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일곱째,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개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덟째, 장애, 경제적 약자, 실업자, 홀리스, 사회적 부양대상자 등 만성적 실업자 혹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개인에게 고용기회를 증진시킬 때이다.¹²⁾ 종합하면, 미국에서 직업교육의 운영 기초는 프로그램의 연구, 시행, 평가, 보급에 따른 일련의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평생교육차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 법의 경우, 이전 CTE 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³⁾ 주정부와 지역 사회 지도자가 연방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교육적 변화와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연방재원의 사용에 대해 융통성을 갖도록 하였다. 둘째, 혁신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증진한다. 셋째, 학부모, 학생, 이해당사자들에게 권한위임을 강화하여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한다. 넷째, 연방개입(federal intervention)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정실(political favoritism)을 예방하여 연방의 역할을 제한한다.

CTE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재원의 규모와 배분방식이 될 것이다. 2018년 연방지원 규모는 11억 달러이다. 2004년 13억 달러에 비하면 감소된 예산이지만, 2017년 이후 11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재원의 배분 방식은 각 주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각 주의 특정 연령 집단¹⁴⁾과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른 공식을

10 김재금 외(2007). 같은 보고서, p.221.

11 https://en.wikipedia.org/wiki/Carl_D._Perkins_Vocational_and_Technical_Education_Act

12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13 <https://edworkforc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01633>

14 CTE에 따르면, 15-19세(50%), 20-24세(20%), 25-60세(15%), 각 주 배정(15%)을 요구한다.

적용한다. 각 주는 연방재원 중 최소 85%를 지역 단위 교육기관, 직업기술학교, 2년제 대학 및 비영리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재원 중 중등교육기관에 64%, 고등교육기관에 36%를 배분된다. 예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에는 전체 예산의 15%를 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¹⁵⁾

또한 CTE의 괄목할 만한 특성은 이주민(immigrant)의 고용 능력을 증진시키고 질 높은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능력개발에 관한 조문을 두었다. 이주민은 미국 성인이 차지하는 낮은 문해능력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낮은 수리 능력자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적절한 법령이 아닐 수 없다.¹⁶⁾

이제까지 논의한 미국의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연방차원의 주요 법령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미국 연방차원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주요 법령

주요 법령	주요 내용	비고
모릴법(1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州)에서 대학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증여 	주립대학의 출현으로 농업, 기계 분야 직업교육 발전
스미스-휴법(1917년) The Smith-Hughe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에서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직업교육 시행 제도 마련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의 농업, 상업, 가정 및 소비자 과학, 경제 등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교사의 급여 및 훈련 비용의 공동 부담 	직업교육 관련 최초 연방법령
직업교육법(1963년) Vocational Edu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에 예산 지원 확대 현직에서 직업안정화 및 승진을 위한 재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에 예산 투입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및 장애인 직업교육 제도 마련
퍼킨스법(1984년) Carl D. Perkins Vocational Edu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대상의 노동인력의 기술향상 및 직업기회 제공 	성인을 대상 직업교육제도 마련
퍼킨스법(1990년)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ology Edu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테크 프렙(Tech Prep)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 및 장비 확보 ESL 교육 강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원 확대 	기존 직업교육이 직업기술교육으로 변경

15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fact-sheet-perkins-cte-serve-immigrants/>

16 위와 같은 사이트

주요 법령	주요 내용	비고
퍼킨스법(1998년)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 프렙(Tech Prep) 프로그램을 4년제 대학으로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확대 	테크 프렙의 4년제 대학으로 확대
퍼킨스법(2006년)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주의 직업기술교육에 연방정부 예산 투입 • 직업기술교육을 학문적 이론과 통합적으로 접근 • 개인의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직업기술교육과 학문이론의 연계
퍼킨스법(2018년)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21st Century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대상의 직업기술교육 	이주민 대상 직업교육

출처: <박화춘 (2017). 미국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령, 교육체제, 동향 및 문제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20권 5호. 2017년 9월>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 보완함.

III 시사점 및 제언

본고에서는 미국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법제 중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입하는 직업교육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산업혁명이 늦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적 내란이었던 남북전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와 국론 분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와중에 직업교육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른바 모릴법의 제정을 통해 각 주에 주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 부지를 무상 증여하고 이렇게 설립된 고등교육기관들이 농업과 기계 분야에서의 중점적인 교육뿐 아니라 국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기술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둘째, 미국은 안팎에서 일어난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직업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과학을 선점했을 때는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과학, 수학, 외국어 등에 중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1960년대에는 달에 유인위성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셋째, 고교와 대학을 연계시키는 테크 프렙(Tech Prep)도 눈여겨볼 점이다. 고교 2년 과정과 대학 2년 내지 4년 과정을 연계시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CTE에서는 미국 인구 분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을 추가하면서 직업교육에서도 다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있다.

넷째, 학문적 이론과 직업기술교육의 통합을 통해 직업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직업교육이 특정의 직업에 필요한 기술만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현장에서 응용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물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이론과 기술을 통합시키는 방향성은

법령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초기의 법령은 직업교육에서 평생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을 강조하는 Vocational Education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사용하면서 생애적인 관점에서의 경력이나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관련지어 제언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업교육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1995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199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6년) 등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법제가 갖춰져 있지만, 이 관련 법령들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는다. 미국의 경우,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시대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기관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렇게 했을 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는 물론 산학협동을 통한 직업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에 재원지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 외국계 이주민 숫자가 15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성을 요구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이주민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 이주민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행할 때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개정된 퍼킨스법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 김재금 외(201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 보고서. p.215.
- 박화춘 (2017). 미국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령, 교육체제, 동향 및 문제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20권 5호.
- 안기성(1994). 교육법학연구. 고려대 출판부. 212-220.
- 염철현(2000). 미국의 고등교육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Morrill Act를 중심으로. 북미연구 제5집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북미연구소.
- Brubacher, J. S. & Rudy, W., Higher education in transition. N.Y.: Harper & Row. 1958. p.64.
- Preambl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 <https://www.acteonline.org/celebrate-the-future-of-cte-with-100-years-of-the-smith-hughes-act>
- https://en.wikipedia.org/wiki/Smith%E2%80%93Hughes_Act
- https://en.wikipedia.org/wiki/Carl_D._Perkins_Vocational_and_Technical_Education_Act
- <http://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019263656504930104?journalCode=bulc>
- <https://edworkforc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01633>
-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fact-sheet-perkins-cte-serve-immigrants>